

제185회 국회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16 호

국회 사무처

1997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
2. 통일외무위원장 보궐선거
3.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5. 국적법 개정법률안
6.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7.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8.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9.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1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3.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4.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15.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16.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17.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8.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19.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20.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21. 교육기본법안
22. 초·중등교육법안
23. 고등교육법안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25.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6. 한국교육방송원법 중 개정법률안
27. 환경농업육성법안(대안)
28.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
29.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3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1.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32.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3.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34.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

3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3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
37.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38.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39.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40.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
41.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
43.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5.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4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4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49.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
50.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51.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52.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동에 대한 동의안
53.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
54. 199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3
1.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계속)	8
2. 통일외무위원장 보궐선거(계속)	8
○ 통일외무위원장(박관용) 인사	9
3.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4.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5. 국적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6.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9
8.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9.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9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3.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
14.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5.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6.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7.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1
18.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1
19.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1
20.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1
21. 교육기본법안(정부 제출)	11

22. 초·중등교육법안(정부 제출) 11

23. 고등교육법안(정부 제출) 11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

25.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6. 한국교육방송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7. 환경농업육성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2

28.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29.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3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31.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32.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3

33.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이강희 의원 외 25인 발의) 13

34.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3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3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정부 제출) 13

37.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4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43.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45.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4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4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이성재·이재선·신영균 의원 외 20인 발의) 14

49.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

7.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20

38.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2

39.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황성균 의원 외 30인 발의) 32

40.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2

41.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50.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33

51.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33

52.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동에 대한 동의안 33

53.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33

54. 1998년도 예산안 34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37

(15시39분 개의)

(15시40분)

○의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오늘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얼마 전 어느 의원께서 우리 당 총재가 종친회에 참석해 절을 못했다고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

o 5분자유발언

다. 도대체 몸이 불편해서 절을 하지 못하는 것과 대통령직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미국 국민과 언론은 루즈벨트가 절을 하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임을 들어 대통령직에 대한 시비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어느 패널은 우리 당 총재께서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청기의 사용과 대통령직의 수행이 밀접한 관계나 있는 양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나이가 젊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과학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유독 이 땅의 지식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논리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에서는 사람의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 2명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사유도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감히 넘겨다보지도 못할 면제사유로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병적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입이 맞아야 하는데 어설픈 조작이 금방 들통 난 것입니다. 그나마 나타난 병적서류를 검토한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써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수상한 병적서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70%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1991년 1월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받은 내역이 없다, 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원장은 영장을 가져오면 진찰내역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외경제연구원에서 신체검사한 결과가 68kg이라고 합니다. 신한국당은 이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통사고로 고관절을 다치면 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 대통령 후보 건강 문제와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정치 선배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잡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식을 2명이나, 그것도 똑같은 면제사유로 병역을 면하게 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과연 70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6·25 전쟁에서 다리가 잘리고 앞이 안 보이게 된 수십만 상이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용납할 것인가, 수십만 6·25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 대통령을 따라 줄는지 이 점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순리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45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밝힌 이후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비리 또는 병역특혜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자원봉사 보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멀리 보냈다는 오해만을 증폭시킬 따름입니다.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에 관하여 명쾌하게 밝힐 시기입니다. 오 늘이라도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병역특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낱알이 공개하여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진상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촉구할 의무가 바로 우리 국회에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감히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나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환 회의장에 들어와 계신 의원께서는 죄송하지만 바깥에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의결정족수가 부족됩니다.

5분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각 교섭단체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정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의 하나인 금융실명제의 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율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실기에도 한 원인이 있지만 금융실명제가 표류하면서 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회창 후보가 저지른 금융실명제 파괴는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해화 된 금융실명제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4일 TV토론회에서 허위 날조 된 김대중 후보의 소위 비자금 자료를 당시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건네준 사실과 그것을 폭로하도록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금융실명제를 파괴한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회창 후보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허위자료의 조작과 폭로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료가 시민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자료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없이는 입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비밀조항을 위반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작·폭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남의 금융정보를 조작해서 상대후보를 더러운 정치인으로 몰아 부치면서 혁명과업 수행을 외치는 이 후보의 정치행태를 볼 때 그는 더 이상 대쪽도 아니고 범대로도 아님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정략적 목적에 필요하다면 음해·모략도 서슴지 않는 구태정치의 발 빠른 계승자일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인기가 급락하자 국가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권욕을 위하여 이 같은 정치적 범죄행위

를 자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전경련이 현 경제난국의 주범이 금융실명제에 기인한다며 유보를 주장하자 TV토론에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바로 이 후보 자신이 금융실명제를 실질적으로 파괴한 주범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기만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조작·폭로행위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권력기관에 의해 세세히 사찰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을 더욱 파탄지경에 몰아넣고 급기야 최근의 환율폭등, 주가폭락 등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파멸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다음의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추악한 정권욕에서 시작했고 둘째, 자료를 조작했으며 셋째,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을 자행했고 다섯째,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가 제보를 받았다고 국민을 속인 데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위자료를 조작한 기관과 관련자들을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파괴하고 경제불안을 심화시켜 국가를 총체적 위기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몰아넣은 데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한 다음은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의원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5분발언이라는 것을 처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경험한 또 체험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제가 밖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생각하고 막상 국회의원이 되어서 느낀 점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본회의나 또 상임위원회나 각종 국회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제시간에 한 번도 성원이 되어서 개최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없다면 회의는 제시간에 지켜졌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지금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님과 정세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나는 이런이런 점을 다른 후보와 달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저는 정치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남의 약점이나 남의 잘못을 서로 흔들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저희당이 총재님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총재님의 병역기피 의혹을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께서 남의 신체적 약점을 조롱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특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총재님에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미 우리 당에서 해명할 만큼 해명한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존경하는 국민회의 의원님들께서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한 쪽에서 둘을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왜 아들 군대 안 보냈느냐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왜 총재가 군에 안 갔느냐 이렇게 물고 나오면 이것이 대선전에 뗏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실이고 거짓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말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밖에 대선이 안 남았는데 앞으로 대선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당당하게 누가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그것을 꺾어내려야겠다고 공격하고 누가 인기가 좀 더 올라가면 그것을 또 쳐서 하고 이것은 저는 정치에서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터무니없이 야당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하면 다행이고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존경하는 국민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3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남의 허물을 건드려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충정어린 충고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정세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란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영애 의원님,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같은 소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석 128명에 불과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 의사일정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잠시 기다려서 교섭단체에서 각 의원들에 대해서 출석을 다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와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범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이 의원! 이 의원!

(○이원법 의원 단상에서 — 3당이 다 같이 회의하는데 왜 자민련은 발언권을 달라고 하니까 발언권을 안 준다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2당이 다 발언했으면 자민련도 발언권을 주셔야지 발언권을 안 주시는 것이……)

이원법 의원, 의사규칙을 지켜야지요. 발언신청을 하면 의장이 검토를 해서 발언허가를 한 뒤에 단상에 올라오셔야지 그렇게 선점을 해 가지고 그냥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 좀 들어가세요.

(○이원법 의원 단상에서 — 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하면 주셔야지요. 어디 다른 기관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안 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의원이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식을 취하는 순간인데 의사 진행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장께서 쾌히 받아들여 주셔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원법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되고 안 되고는 의장이 합니다.

지금 이원법 의원의 발언신청 내용이 예산편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이 본회의에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이따가 예산이 넘어왔을 때 우리 이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구 의원, 이 의원 잠깐 들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데 의사진행은 아시다시피 오늘 60여 건의 안건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적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분이 하게 되어서 만일 허가를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발언이든 간에 무제한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려 볼까요?

(○구천서 의원 단하에서 — 한 분 나왔잖아요?)

한 분 나올는지 두 분 나올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구천서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이 잘못 됐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이원법 의원 단상에서 — 지금 회의를 하

고 있습니까? 막간에……)

막간이라는 말씀은 어째가……

이원법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이원법 의원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IMF에서 우리나라를 구제금융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에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남미에 가서 차관을 주겠다고, 융자를 주겠다고, 무상원조를 주겠다고 소리치던 이 김영삼 정권이 하루아침에 쪽박 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부산 신행만 가덕도에 작년엔 900억을 주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또 1800억을 거기에다가 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하니까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신한국당의 입장이올시다. 부총리의 입장이올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3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대통령 후보이었던 길래 공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3당 후보의 공약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균형예산, 지역의 편차를 두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왜 이 정부가, 이 신한국당이 이렇게 독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감추어 놓았던 예산을 내놓고 이것은 깎아 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넣으려는 것은 반영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가 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과 증액을 논하지 않은 어느 부분보다 국회의원의 주장이 우선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조금 이따가 상정할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날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의원들의 잘못을 우리가 채근을 듣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장은 의원이 의석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정치적 유연성은 하나도 발

회하지 못하면서 매일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만 채근하다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을 새울지 차수변경을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1월 18일 이번 국회를 종료시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총무의 합의사항이지 제도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하다가 다 못한 이야기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내일까지라도 연장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국회의장께서는 백 번 고려해서 국회의원에 의한 예산편성이 명실공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의장의 배려가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밖에 지금 9명 의원이 계신다는 데 들어와 주세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의장도 사람입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왜 자꾸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지금 어찌자는 것입니까? 아까부터 여기 와 계신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지금 국회에 나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십니까? 지금

안 나온 사람 이름 불러요!」 하는 의원 있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 계신 의원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

(16시1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7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외무위원장(정재문)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일외무위원장 보궐선거

(16시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통일외무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규선 의원, 김충일 의원, 이상현 의원, 홍준표 의원, 한영애 의원, 국창근 의원, 어준선 의원, 이상만 의원, 이상 여덟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호영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통일외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외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속 상임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17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59매입니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5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일외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9표 중 129표를 얻은 박관용 의원

이 통일외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투표결과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
습니다.

○ 통일외무위원장(박관용) 인사

(16시35분)

○의장 김수한 그러면 통일외무위원장으로 당선
되신 박관용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
니다.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다시 통일외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에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여러 안건처리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4.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16시3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의원께서 2건에 대해
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적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6시3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국적법 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
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천정배 의원께서 심사보고하
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국적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국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
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유인물에는 제7항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
가 늦어져서 이것을 다음 순서로 돌리도록 하고
제8항부터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8.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6시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한천 의원 심사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의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어준선 의원 심사보고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3.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시4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 제안설명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4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정구 의원 심사보고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
 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
 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7.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18.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
위원장 제출)
 - 19.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20.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6시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7항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보험업법 중 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
 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
 니다.

.....
 (참 조)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
 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1. 교육기본법안(정부 제출)
 - 22. 초·중등교육법안(정부 제출)
 - 23. 고등교육법안(정부 제출)

(16시45분)

○의장 김수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육기
 본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초·중등교육법안, 의사
 일정 제23항 고등교육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한샘 의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교육기본법안 심사보고서
 초·중등교육법안 심사보고서
 고등교육법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교육기본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등교육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제출)

(16시4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설훈 의원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한국교육방송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5항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한국교육방송원
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
니다.

교육위원회의 안택수 의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교육방송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
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
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환경농업육성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4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7항 환경농업육성법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길재 의원 제안설명토
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
(참 조)
환경농업육성법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부록에 실음)

.....
그러면 환경농업육성법안(대안)에 대해서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8항 어항법 중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
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광원 의원 심사보고토
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먼저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0항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정일영 의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3.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정부 제출)

37.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5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2항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 의사일정 제37항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강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41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5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2항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이성재·이재선·신영균 의원 외 20인 발의)

(16시5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3항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허남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16시5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9항 축산물위생처리
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우재 의원께서 제안설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
습니다.

.....

(참 조)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부록에 실음)

.....

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김홍신 의원 토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의원** 민주당의 김홍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국민회의의 존경하는 채영석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가 눈감으면 그것은 식품이다’ 그
것은 옳은 말입니다. 없는 동·식물은 목숨을 놓
으면 식품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동·식물이 살아 있으면 농림부 소관이고, 죽
으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위생 때문에 이것을
관할해야 됩니다. 이 원칙이 이번에 무너질 찰나
에 있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축산가공식품
의 위생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
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를 다루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업무이관 문제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맞물려
서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중요
한 이 땅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법상 농림부는 축
산을, 복지부는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축산물위생처리법만의 개정을 통해서 축산가공식
품의 위생관리업무를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 선거와 맞
물린 지금 처리하려는 것은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화된 축산농민의
표를 의식한 3당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소비
자, 국민을 외면하고 야합한 졸속입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께서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
하셔야 합니다.

당초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정했어야 할 문
제입니다. 그런데 정권 말기라는 탓에 정부 내
조정이 실패한 이후로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가
지금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
국 정부가 잘못된 것을 국회가 대리전으로 치달
은 그런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에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이 이번에 완전히 묵살되
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을 보
류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보건복지위
원회안으로 제출했지만 법사위는 이 2개의 법안
이 정책적으로 명백히 상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처리에 있어서의 태도와는
상반되게 이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버리고 1
개의 법안만 의결하고 나머지 1개의 법안은 보류
시키는 분명히 편파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점
에 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합니다.

국민의 보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적당히 집단에 대
한 표를 의식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반
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혹을 받
고 있는 축산물위생처리법안은 그 내용의 타당성
을 떠나서 보류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개혁과
제로 넘기는 것은 순리가 분명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보건,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쯤 유
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
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정일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

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소비자단체, 축산관련단체 등의 대표 236명이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청원했을 때 154명의 동료 의원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양보다는 질 그리고 안전과 위생수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7월에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고 2001년에는 소와 쇠고기 수입도 완전 자유화될 예정입니다.

개방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공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의 축산업이 외국 축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축산물은 그 특정한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어 이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육단계에서의 질병 방역과 도축 이후의 위생이 함께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산가공과 유통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이 하나의 관련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축의 사육단계와 이를 가공 유통하는 단계에서의 관리업무를 전문조직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대부분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육부터 가공 유통까지 제1차 생산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사육 도축단계는 농림부가, 가공 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는 수의 전문조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우리의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5년에 모든 식품의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취지에서 축산물가공식품의 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는 축산물 위생관리가 전문가인 축산 전문조직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비전문가가 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어 버렸으며 결국 그 대가는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고스

란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의 사육·도축과 가공·유통단계가 분리되고 축산물을 비전문가가 관리함으로써 축산식품의 질병,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제기될 때 역추적 등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게 단순한 수치 등을 발표해서 생산자에게는 물론 위생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축사육과 도축·가공 유통단계의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조직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가축의 도축·집유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경우 사육단계와 가공단계의 관리가 이원화되어서 질병방역과 위생검사가 연계가 안 된다는 근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가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관장하는 일원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미 농림부에서는 전문조직과 인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새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 정부조직의 간소화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물 가공업무를의 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계부처 간의 관할권 다툼이나 전문조직의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또한 생산자만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 가축과 축산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제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원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수많은 관련단체의 건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행정부 내에서도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2년 동안 심의하여 결정해서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설명에서도 이우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률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축산물의 판매·유통단계에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관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아서 안 19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양 부처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정의화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정의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정의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안을 오늘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긴급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불합리한 내용 문제입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의 가공·운송·유통단계의 위생검사 등 관할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단계를 관장하는 농림부가 가공·운반·유통단계까지 관장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축의 전염병 관련 검사를 하던 수의사가 사람이 먹는 축산물의 유통·운송단계까지의 위생검사까지 맡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 문제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양축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 전체의 위생과 건강을 담보로 일부 수의사들의 권익 확장만 도모할 뿐 양축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축산물의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하고 가공·운송·유통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위생건강을 위해서도, 양축농가를 위해서도 타당한 업무분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축장과 집유장의 보다 위생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

위생법개정안을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의 문제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2건의 법률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관할권 문제가 상호 충돌되는 내용으로서 법사위원회에서는 그중 1건인 축산물위생처리법만 의결하고 식품위생법은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내용에서나 절차에서 당연히 소관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내용이 조정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등 원안을 제출할 때는 각각 현재 각 위원회의 소관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할 것이고 타 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때는 연석회의를 통하여 양 위원회 간 의견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법률안은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국회 내에서 소관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게 되며 법개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가공·운송·유통단계의 관할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식품위생 전반에 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현 시점에서 부처 간의 관할권 문제, 특히 국민위생과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위생처리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내용에서나 절차에서나 시기적인 면에서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급하지도 않은 이 법안을 졸속처리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저의 동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중에 발언하고 있는데 너무 장내가 시끄러우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 들어와 주세요. 의장석에서 보면 자리를 자꾸 뜨는 의원은 아마 습관적인 모양이네요.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다음은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또 정일영 의원 그리고 우리 정의화 의원 각 당에서 찬반토론을 해 주셔서 경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것이 두 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식품검사를 농림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가져가느냐 하면 소,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쇠고기값, 돼지고기값 안정정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홍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 돼지가 눈 깜박깜박 뜨고 살아 있을 때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병들면 수의사가 주사를 줘야 합니다. 좋은 사료를 먹여서 육질을 좋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 돼지를 먹으려고 잡지 양지바른 명당 선산에 고이고이 묻어 주려고 소, 돼지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자기 조상이라고 명당에다 묻어 주겠습니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 돼지가 눈을 딱 뜨고 있는 순간까지는 수의사, 눈을 딱 감으면 식품, 물 먹인 소인가 아닌가, 육질이 좋은가, 세균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지금 농림부 얘기는 웅색하게 가축에 전염병이 번질까 봐서 농림부가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축전염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먹고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썩은 쇠고기 먹고 죽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물러나라고 합니까, 농림부장관 물러나라고 합니까? 이것은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짓이네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것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쇠고기, 돼지고기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이것 곧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이것이네요. 언젠가는 청으로 독립시켜 가지고 식품의약품을 전부 여기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O-157 검사를 어디에서 한 줄 아십니까? 동물검역소에서 했어요. 이것 외국에서 알면 창피합니다. 어떻게 수입쇠고기를 동물검역소에서 하느냐 이것이네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이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소가 눈을 감고 돼지가 눈을 감으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육점에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것, 마트에서 파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라, 그것 도대체 왜 그러느냐, 쇠고기값, 돼지고기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고기값, 돼지고기값을 그렇게 안정시켜야 하느냐 이것이네요. 말도 아니지 쇠고기값, 돼지고기값은 가축 가지고 해야지 4600명……, 제가 이리농림고등학교 수의측산과 출신입니다. 제가 수의사입니다. 4600명 수의사 때문에 이런 법 만들어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수의사들이 책임지겠다……

(「알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현명하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 각 당에서 한 사람씩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분 양식대로 통과되어도 좋은데 이것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든가를 떠나서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세 분이 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한 분이 했는데 이제 의장으로서 마지막 찬성토론 한 분만 더 드리면 찬성 둘, 반대 셋 이렇게 됩니다.

(「제안설명이 어떻게 찬성토론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찬반토론을 하기 때문에 반대토론 세 분, 찬성토론 두 분이니까 나와서 간단하게 발언하세요.

○이우재 의원 의원 상호 간에 이런 문제를 가

지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안전을 위해서 최종 소비단계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모든 식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에서 병이 발생되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전염이 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시중에서 축산물을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균이다, 균이 몇 가지 종류가 어떻게 있다 하는 현상만 가지고는 안전식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육관리, 가공 그리고 가축사양 심지어는 사료, 토양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뽑아내지 않으면 축산물은 안전한 식품으로 공급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전문수의사는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것은 전문수의조직이 아니고 독성검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의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 FDA에서도 식품을 하지만 축산물에 대해서는 독립조직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법률적인 체계상의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체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차관과 농림부차관이 그 상충되는 부분을 완전히 합의해 가지고 정리한 법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가축의 사양, 기르는 것 그리고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것 그리고 가공하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매점 판매점까지 가는 과정은 농림부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전히 위생검사를 한다 이렇게 합의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전문조직 한 군데서 해야 돼요. 구제역의 경우 근본적으로 그 토양에서부터 균이 얼마만큼 잔존해 있는가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근

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축산농가만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안전식품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당의 당론으로 합의된 것이고 4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고 신한국당도 당론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된 것이고 당 부처간에 합의를 완전히 본 것인데 상임위 간에 마치 이것이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니까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소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의장 김수환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회의장에 계시다가 퇴장하신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지 않는 의원들, 정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기국회 마지막에 지금 됩니까?

먼저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나가지 마세요. 지금 계속해서 표결이 있습니다.

(○김고성 의원 의석에서 — 예결회의장 가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장도 지금 못 나갑니다. 조금 계세요. 밖에 뭐 있습니까? 계속 밖을 왜 나가십니까?

(○김고성 의원 의석에서 — 저쪽에서 빨리 오라고 그러고……)

예결위원들 가시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계셔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8인 중 찬성 90인, 반대 21인, 기권 47인으로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상정을 보류했던 제7항과 38항부터 41항까지의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17시3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홍준표 의원이 나오셔서 제
안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이것도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

(참 조)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이미경 의원 토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민주당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
러분!

저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형사소송법 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4대 국회 말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의 보
장, 영장주의 구체화, 피해자의 법적청문권, 재판
청구권,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
지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
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자 언론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
은 정치민주화 못지않은 개혁조치로써 획기적인
인권신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법제
도와 검·경찰의 수사관행을 선진화 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자 수가 이
전에 비해 25% 정도 줄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형사피의자의 25%가 불필요한 구속
을 면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그만큼 보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 1년 만에 15대 국회에서 구속
영장실질심사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법사위 위원
들께서 자정이 넘도록 격론을 벌였고 합의를 만

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합
의안에도 반대하고자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개정
안의 취지를 보면 수사인력이 피의자 호송에 빠
앗겨 수사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다
른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익
숙한 수사관행, 즉 피의자를 구금해서 심리적으
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자술서를 받아 놓고 증
거를 확보해 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서
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수사는 훨씬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후진적인 수사방식이기 때문에 구
속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
닙니다. 인신구속과 자백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서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적인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의
뒷받침이나 수사인력의 훈련, 사회문화 등이 준
비되지 않았다는 항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
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관행은 명백한 인권침해이
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검·경
찰은 과거 방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사예산의
확보 등을 통해 과학적인 수사능력의 획기적인
보강 쪽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오늘 여야 합의한 대안은 ‘피의자 또는 그 변
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관행, 경찰·검찰 문화에서는
구속되면 이미 범인 취급을 받습니다. 검·경찰
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
는 이유도 이런 분위기가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
문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
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가, 또 그 가족, 친지가
판사에게 영장청구의 타당성을 심사받겠다고 요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
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에게는 저의 발언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열 사람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시 되었지만 세계 선진국의 잣대에 비추어서 너무 후진적이었던 관행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신에 대한 구속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구속되어 범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진화, 민주화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본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각계의 반대여론이 높은 이 법의 개정 여부를 정함에 있어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졸속이며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의 이목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4대 국회가 만들어 낸 실질적 영장심사제의 성과를 우리 15대 국회가 후퇴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의원 제가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법안보다도 제 자신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법조의 양맥을 이루는 법원·검찰의 최근의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겠다,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또 두 기관이 가장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의 인권도 보장하고 또 우리 사회 치안도 확립하고 국민의 안녕,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법사위원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한없는 갈등을 느끼면서 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97년 8월 29일 자유민주연합의 이근개 의원님과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찬형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법사위에서는 이 안을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그 투표결과는 일곱 분 중 다섯 분이 찬성하시고 두 분이 반대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직접 불러서 대면해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것이 인권보장을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라고 모든 사람이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안 당시에 직접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것이 구속대상 중에 3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90%에 가까운 대상자를 판사가 직접 불러서 심문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찰의 호송인력이라든가 또 심문기간에 필요한 그 기간만큼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검찰 측의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 지 사실은 10개월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된 이 규정이 과연 개정되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꼭 기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있겠으나, 우선 인권보호를 위해서 법원의 판사가 직접 대면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고 그것과 함께 수사인력이 확보되어서 범죄자를, 특히 악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 또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수사의 효율성 확보, 또 피의자의 인권보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은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권자에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판사가 심문할 수 있되 본인이 여러 가지 수사 제약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고용주, 동거인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할 경우에는 판사가 심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러면 신청의사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의자 본인이 조사과정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심문할 때 구속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판사를 직접 대면해서 심문받을 것을 원하느냐의 여부를 분명히 조서에 올리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그래도 부족해서 혹시 수사과정의 제약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의사가 확실히 표시될 수 없을 때는 본인 스스로 확인서나 별도의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심지어 동거인이나 아니면 고용주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청권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 피의자를 심문할 때 판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수정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치안확립을 위한 수사요원의 확보와 함께 또 인권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조화선에서 우리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주로 야당, 지금은 소수당입니다마는 소수당에서 제안한 법에 우리 법사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법안이 어떤 각 당의 주도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것이 영향을 받을까 봐 각 당 소속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해서 하나의 당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러하듯이 과연 현재에 마련된 이 안이 실제 운영상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양 기관 간의 갈등요인과 또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해 줌으로써 양 기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이 안을 성안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이 이 법안이 쉽게 검토되고 토론되고 의결된 것이 아니고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한없는 고민과 또 많은 분의 양쪽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조화를 이룬다는 선에서 성안을 했다는 점에 참작하시어,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반대하신 분도 있고 표결자체를 거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분들이 8 대 2로 의결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면 8 대 2로 법사에서 의결되었으니까 그 점을 참작하시어 법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안건처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 반대 한 분, 한 분 했습니다. 지금 토론 발언신청이 아직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 분, 찬성 세 분, 세 분, 세 분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토론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계신 천정배 의원 토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정배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도 안산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또한 법사위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의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는 악법 중의 악법일 뿐 아니라 헌법과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나는 법안이므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하는 재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에 대해 유죄나 무죄나, 유죄라면 형량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종국판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를 구속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면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갇혀 있게 되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죄수복에 고무신을 신고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검찰청이나 공개법정에 끌려 나와 망신을 당합니다.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대는 것과 같은 자기방어를 제대로 못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망하기 십상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해직되기 쉽습니다. 가족들도 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가운데 면회다니는 등의 옥바라지로 생업조차 팽개치는 수가 많습니다. 몇 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긴 법정투쟁 끝에 무죄판결로 또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입은 손해를 회복할 길은 없습니

다. 구속으로 인한 피해는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 반면에 똑같은 범죄혐의를 받더라도 불구속 처리되는 사람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 신체적 고통이 없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정에도 말쑥한 복장을 하고 활개를 치며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거나 직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도 작습니다. 이처럼 구속과 불구속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속은 지옥이고 불구속은 천국입니다.

어느 경험 많은 법관으로부터 한국의 실정상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나 불구속이나를 결정하는 재판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재판을 합쳐야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들었습니다.

굳이 법관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의원 여러분을 포함하여 형사피의자가 직접 되어 보거나 가까운 사람이 피의자가 된 경험을 한 많은 국민들은 아마도 구속재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는 재판 즉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경찰이 만든 조서만을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가장 중요한 구속재판을 받으면서도 판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억울한 사정을 호소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라든가 웬만한 행정상의 면허정지를 받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이 절차에 따라 출석해 변명할 기회나 청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인신구속의 결정에서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부당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헌법 12조1항은 「체포,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는 이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도 크고 또한 가혹행위 시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야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 그 전에 피의자에게 함부로 가혹행위를 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가능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마음 놓고 가혹행위를 해도 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또한 구속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관이 기각해서 석방된 피의자의 비율은 7.2%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 93명은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인원 수에 관한한 우리는 세계 일류 국가입니다. 올림픽에 구속인원 수 종목이 있다면 메달감일 것입니다.

93년 한 해에 독일의 총 구속자는 약 3만 7000명이고 일본은 8만 7000명가량인데 우리는 14만 8000여 명입니다. 우리 인구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인데 구속자 수는 일본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94년에 범죄 1000건 당 구속자 수는 독일이 7.82명, 일본이 48명이 좀 넘는데 우리는 88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의자가 구속될 확률은 독일보다 10배 이상, 일본의 약 2배나 되었습니다.

일단 구속된 사람 가운데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수는 8만 3000여 명, 구속피고인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수는 2만 5000여 명입니다. 대략 구속된 100명 중 30명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70명은 석방됩니다.

이렇게 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구속영장을 함부로 남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 구속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고 유치장, 구치소 시설과 경찰관, 교도관 등의 인력을 다량 유지하느라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귀중한 국가의 재부를 경제성장이나 복지증진에 쓰지 않고 국민을 감옥에 붙잡아 두는 데 낭비하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비이성적 상태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4대 국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신설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 피의자에게는 자신이 구속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기 전에 판사를 대면해 억울한 사정 등을 호소할 기회가 일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부도 아닙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측은 물론 법무부, 검찰 측도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올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구속의 남발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온 우리 형사 사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범국가적, 범국민적 노력의 성과물이며 90년대 대표적인 개혁조치인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여 동안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중 83.6%에 이르는 사람이 판사를 대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장기간률이 18.4%로 작년 7.2%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대폭 커졌습니다. 구속자 총 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없지는 않으나 제도 시행초기에 시행착오의 면도 있고 그 성과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9조3항은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관 등에게 신속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심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에 따라 심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현행의 우리 제도는 위 국제규약에 위반이고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대구에서 방화·살인혐의로 구속되어 6개월간이나 옥살이를 하던 임모 씨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석방됐다는 보도를 접하셨지요? 그는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하는 바람에 살인했다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이 허위자백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판사가 그를 불러 보지도 않고 그냥 구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일 그에게 판사를 만나 호소할 기회가 쥐었다면 처음부터 경찰의 고문사실이 밝혀지고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대폭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법관은 수사기록에 의해 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물어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의 재량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피의자 등의 신청이 없으면, 심지어 수사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워져서 법관이 원하더라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에서도 피의자 측이 신청하면 될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재판은,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옥박지르는 경우에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 변호인을 선임할 돈도 없고 가족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힘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만 보호받게 됩니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의 폐해를 확대 재생산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은 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법관에게 데려가느라 수사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수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경찰의 호송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협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신한국당을 경비하던 경찰인력이 철수했다고 하던데 경찰에 불요불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또 정말 필요하

다면 증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포기한 채 모처럼 채택한 귀중한 제도를 단 1년도 시행해 보지 않고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수구적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특히 사법부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민간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각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졸속 입법을 하려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헌법과 국제조약상 요청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인권이 존중되는 선진국,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귀중한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이 제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키고 국가기관 간의, 사법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백해무익한 입법을 졸속으로 강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정과를 초월한 슬기롭고 용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이국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인권보장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규약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 내지 개선하는 것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이 위면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피의자가 심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판사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심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조차도 피의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심문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피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자신이 심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칙상 당연하고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에도 더욱 충실한 것이며 국제인권규약을 따르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도 합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유전 심문, 무전 불심문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정안은 현재의 유전 심문, 무전 불심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판사가 마음대로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피의자를 거의 100% 심문하는 한편 둘째,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심문을 원하더라도 심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셋째, 수사기관이 불심문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구속적부심사제도나 보석의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에게 구속적부심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강요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첫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피의자심문 신청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권자를 피의자 이외에도 변호인 그리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심지어는 고용주 등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심문을 신청하는 길도 터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구속적부심사제도에서도 그렇듯이 권리 구제를 위한 형사소송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이 제도에서만은 신청권을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반대 입장의 견해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안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도록 하는 개정안임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조순형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중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피의자 심문을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인권과 형사사법절차의 중대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기에 저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이라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부터 구속위주의 수사재판 관행이 반성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연평균 구속자 현황을 보면 매년 14만 8600명에 영장이 청구되고 그중 93%인 13만 820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자 중 22%인 3만 857명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석방되고 나머지 1만 7357명만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또 1심에서 당초 구속자 중 31%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속자의 3분의 2가 검사의 구속취소, 법원의 구

속적부심,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구속제도의 이러한 운영실태를 보면 그동안 구속이 얼마나 남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인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현실에서는 완전히 형해화 되었고 구속은 그 자체가 징벌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과거의 구속현상은 구속영장 재판단계에서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 이 때문에 그동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자백의 강요 등 불법행위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된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이 같은 구속 위주의 수사재판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헌법과 국제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80%에 이르는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피의자의 호송에 따르는 수사기관의 인력낭비로 범죄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제한,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송인력과 예산의 확충, 심문율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한 인권, 기본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자체가 구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편의나 비용을 이유로 제도를 없애거나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다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지배하에 있는 사정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신청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권리가 되어서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제로 되어 있는 구속적부심

제도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저의 이러한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든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법관대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신청권자도 이 개정안과 동일하게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또는 고용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신청률은 구속피의자의 10%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체포·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 기능은 사실상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신청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기관이 제출한 신문조서에는 피의자가 심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당시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체포와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의 법 제도하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신문조사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조사 자체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질 심사를 신청하는지 여부는 그 조서에 기재된 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지적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당연히 적법한 수사를 할 것인데 그를 믿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자백과 증거의 용이한 확보를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일반론과 지난번에 이성환 과천시장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아직까지도 우리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사 편의를 위해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인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인 구속단계에서 법관의 심문을

받음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 청문권을 보장하고 영장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무기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속단계에서의 법관심사는 선진 법치국가라면 예외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난 90년에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제 9조3항은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원에게 신속히 인치되어야 하고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체포·구금의 타당성 및 구속의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기본권을 구체화한 것에 다름이 아님에도 이를 수사기관의 편의와 효율성을 내세워 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이며 기본권 침해이므로 당연히 이 법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을 보면 세 차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거쳤고 이들에 걸친 법사위 상임위의 질의·토론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의 원칙에 관련되는 기본법임에도 이 안전 처리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대한변협, 민변 같은 재야 법조계나 학계, 시민단체 의견은 전혀 들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이 사실상 폐지하려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도입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고 대법원과 법무부의 합의와 국회의 충분한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채 1년도 안 된 지금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 번 없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졸속 입법의 극치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그 발의와 심의과정을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도함으로써 심히 공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당사자는 사법부와 수사기관, 재야 법조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체 국민이 당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려면 당사자인 사법부, 검찰, 변호사단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발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검찰 측의 의견만을 들어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여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인 사법부와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검찰만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이처럼 졸속으로 강행처리된 것은 한마디로 법사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의 다수의 횡포에 다르아 아니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개 법률안을 발의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평하게 해야만 합니다. 특히 법안의 내용에서 일부 이해집단의 이해와 의견만이 수렴·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 존폐를 둘러싸고 사법의 양대 지주라 할 법원과 검찰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어디까지나 공평한 입장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아무리 공평하게 소신껏 심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그 심의과정에 대하여 그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에 반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처리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포함한 현행 인신구속 전반에 걸쳐 법원, 검찰, 경찰, 대한변협, 민변 등 재야 법조계, 학계, 시민인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당부드리면서 이로써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제 마지막으로 찬성토론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세 분, 찬성토론 세 분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히 찬반의 의견에 대해서 다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은 곧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이 끝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석재 의원 법사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기를 바라는 찬성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96년도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죄지은 사람을 구속하려면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그 서류를 검찰을 거쳐서 판사 앞으로 가면 판사가 서류만 심사해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서명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또 기각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으면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물어 보고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실질심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판사가 재판에 역력이 있고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인력이 충분하다면 어느 피의자건 간에 판사가 다 피의자를 불러 가지고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년에 구속영장 청구된 인원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1만 8451명입니다. 이 중에 판사가 직접 불러서 물어본 사람이 9만 7007명입니다. 그러면 피의자 한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원 판사 앞으로 데리고 가는 데 적어도 경찰인력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9만 7000여 명을 판사가 직접 심문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연인원 30만 명가량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범죄예방이나 또는 피

의자 검거 또는 치안질서에 투입되었더라면 오늘 의 우리 사회질서는 좀 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판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불러서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자가 판사의 대면권을 원할 때만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때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하면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판사와 대면해서, 나 영장심사 받겠다 하는 권리를 본의 아니게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고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 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그리고 또 고용인까지 직접 심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설령 나는 판사 대면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독립해서 판사한테 신청하면 판사는 그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인권이 후퇴된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물어볼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가 어디까지나, 나 판사 직접 만나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영장실질심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피의자 권리인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살인죄를 범했다든지 또는 중죄를 범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몇 년 선고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판사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판사 대면이라는 것은 영장을 기각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판사한테 잘 보여 가지고 구속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안, 그런 정도의 범죄를 범한 사람 같으면 판사 대면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죄라든지, 사람치고 뺑소니해서 징역을 몇 년 정도 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중죄인들이 판사 대면한다고 판사가 영장기각해 줘니까? 오히려 나는 판사 대면이고 뭐고 귀찮다 뻔

리 구속이나 하고 절차에 따라서 재판받고 형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때는 판사가 구태여 물어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도 더 보장이 되고 우리 사회의 치안질서 유지나 또는 범죄의 예방, 범인 검거 이런 것이 더 잘 된다고 확신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수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왜 안 주십니까?)

한 의원, 잠깐 계세요.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찬반토론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의사진행은 지금 관행상 안 됩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진행은 의사의 진행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의사진행의 취지에 관해서도 지금 제안에 설명이 없습니다. 한 의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저는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 지금 표결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서면으로 분명코 의사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 의원, 이따가 발언드릴게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안 됩니다. 지금 분명코 아까 20분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를 운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의원,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를 들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왜 의사진행발언을 못하게 하십니까?)

한 의원, 지금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분 전에 신청했다라도 20분 동안 찬성·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찬성·반대토론을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까?

까?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한영애 의원의 발언 신청은 이 표결처리가 끝난 뒤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인지 의사진행에 관한 취지를 다시 설명하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를 넣어 주시면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취지를 먼저 의장에게 제출해서……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내용을 썼 습니다.)

지금 한영애 의원이 제출한 의사진행발언 통지서의 발언취지는 영장실질심사제 건에 대한 의사 진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찬반토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저는 분명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이 필요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왜 막습니까? 제가 내용도 밝혔는데 왜 막습니까?)

그 내용이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것이라면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 좀 양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5분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본래 의사진행은 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의원, 조금 양해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영장실질심사제 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했는데 왜 안 준다는 것입니까?)

그 의사진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아까 이원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여성 의원은 안 주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의사진행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를 시켜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조금 양보해 주세요. 조금 협조해 주세요. 이따가 의사진행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이 의사진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20분 전에 절차를

밟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영애 의원 협조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표결처리 끝나 버리면 제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이 왜곡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의사진행의 내용 속에는 분명코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추호도 법을 어긴 일이 없고 사전에 서면으로 분명코 보냈고……)

그것은 의사진행이 안 되지요. 찬반토론도 끝났고……

한영애 의원, 조금 양보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5분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발언을 못 드립니다. 발언 드릴 수가 없어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저도 이 단상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의원, 그냥 표결 진행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이 악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기관인 의원이 의사진행을 요구하는데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도 의사진행 나름 아닙니까?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찬반토론을 할 때 반대토론을 하신다거나 찬성토론을 하시면 얼마든지 발언의 기회가 있는데 찬반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선포가 된 이 마당에 거기에 관한, 더더군다나……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의장이 내용을 예단해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영애 의원, 이해해 주세요. 나가시지요.

(○류선호 의원 단상에서 — 기회를 주시고 반대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또 받아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표결선포가 되었습니다.

(○류선호 의원 단상에서 — 표결선포를 하셨더라도……)

국회법에 ‘하셨더라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한영애 의원께서

조금 양보를 하세요. 한영애 의원 조금 양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상 원만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김호일 의원 단상에서 — 그런 식으로 물을 깨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이원범 의원은 그렇게……)

한영애 의원! 한영애 의원! 찬반토론 종결선포를 하고 또 표결선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이 안건 처리 후에……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절차를 밟아서 20분 전에 했는데도 직권으로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승복할 수 없어요.)

표결선포 후에는 의견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그리고 의장님은 남녀 의원들을 너무나 불평등하게 발언권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원범 의원은 의사진행을 요구했을 때 왜 받아들였습니까?)

이원범 의원의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이것은, 한 의원! 이따가 발언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표결선포가 되었으니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좀 나가 주세요. 지금…… 발언이 안 됩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안 되면, 의장님도 잘 아시지요? 내려갈 제가 아닙니다. 의사진행을 주어야지 왜 의원의 의사진행을 막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장내 소란)

(○김호일 의원 단상에서 — 다른 의원도 아니고 우리가 총무단 아닙니까?)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총무단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법안이 아닙니다. 사천오백만의 인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김호일 의원 단상에서 — 그 문제는 의원들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저는 분명한 소견이 서서 의사진행을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운영에 협조 안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의장께서 이 부분에서 조정능력을 가지셔야지, 뭘 그렇게 직권으로……)

이거 봐요, 표결선포가 된 뒤에는 의사진행이 안 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에요. 그것을 아세요. 표결선포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사진행은 끝난 뒤에 드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표결 가부에, 찬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기 내용이 영장실질심사제에 관한 의사진행을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드리면 그 국회운영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건 다 집어치우고 다른 것만 하지요.

(장내 소란)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아니,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리상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을 긴장시키고 고통주고 있는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자체가…… 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의장님! 그냥 표결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한영애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한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지금 한 의원 말씀이 단편적으로 사천오백만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기우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많은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찬성토론도 했고 한영애 의원께서도 아마 의사진행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 건에 대한 의사진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부, 이미 찬반이 다 끝났고 표결선포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께서 지금 그 말씀은 아마 한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다 생각해서 표결에 태도를 표명할 줄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릴게요, 이따가 드릴게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방법을 제시하했는데요, 의장님이 왜 중요한 이 법안을 토론자를 제한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요청한 이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한 부분은 의사진행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고요, 한영애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시든, 찬성토론을 하시든 이 문제에 관한 찬반토론에 참가하시겠다고 하는 발언신청을 받아 본 일도 없고 따라서 의장이 이것을 허가하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단, 의사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이미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곤란하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분명코 본 의원은 의장님이 이미 예단해 가지고 총 반대·찬성토론자를 3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미 이 부분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의사진행을 요청했고 그렇다면 반대토론을 하라, 찬성토론도 하나 넣겠다 이런 융통성 있는 의사진행을 했다면 내가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명으로 예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제한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의원! 반대토론 신청한 분을 제한하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의원!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그러면 반대토론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토론종결 선포가 되었고 표결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많은데……)

자! 우리 한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여기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양해를 해주세요.

한 의원! 조금 협조해 주세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한 의원! 좀 협조해 주세요.

(○한영애 의원 단상에서 — 지금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검사 따위들이 이따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핵심적인 인권장치를 갖다가…… 이보다

더 광범위해도 우리 국민에게, 피의자들의 대항권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겠다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고 나오십니까? 입법기관에서……) 한 의원, 됐습니다. 한 의원, 충분히 의사표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황성균 의원 외 30인 발의)

40.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4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8항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성균 의원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50분)

○의장 김수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오양순 의원이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51.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52.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동에 대한 동의안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0항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동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어준선 의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동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차관 도입계획 변동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18시52분)

○의장 김수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되어서 보고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
(각 상임위원장)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건을 각각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6건의 국정감사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최종심사를 지금 잠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신 의원들께서는 바깥에 나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54. 1998년도 예산안

(20시58분)

○의장 김수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7차 회의에서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재정경제원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내년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통일외교·안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교육투자,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증진,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 질의를 한 다음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8일까지 6일간 종합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서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금년도 예산배정액의 불용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반영하지 않았고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제기되었던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소위원회이 합의로 11월 18일 제5차 소위원회에서 이강두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긴축을 슬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유망벤처기업의 발굴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며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다져 가면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형성된 199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4.1% 증가한 70조 3603억 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56조 523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54조 7999억 원, 교통세가 6조 5432억 원, 관세

및 방위세 6조 3201억 원, 세외수입 2조 69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18조 3728억 원, 사회개발비 6조 8370억 원, 교육비 12조 7729억 원, 방위비 15조 245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7조 3520억 원, 일반행정비 7조 3868억 원, 그리고 예비비 9720억 원 및 제 지출 1조 42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 967억 원을 순삭감하였는 바 세입예산에서 소득세 380억 원, 부가가치세 584억 원 등 967억 원을 순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수자원공사 출자 400억 원, 대학자구노력지원 100억 원, 지역의보지원 39억 원 등 3478억 원을 삭감한 반면 비료계정 부채상환 500억 원, 경로연금 480억 원, 외국인 투자유치 5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60억 원, 금강수계치수 20억 원 등 25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 1038억 원을 순삭감하였는 바 대외경제협력기금 800억 원, 수출입은행융자 300억 원 등 1150억 원을 삭감한 반면 광주 도심철도 이전사업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규모상으로는 3233억 원을 순삭감하였는 바 부산지하철 채무인수 4008억 원, 경부고속철도사업 1000억 원 등 5008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속도로건설 155억 원, 일반국도건설 50억 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 50억 원 등 17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삭감 없이 호남선복선화 200억 원, 장항선개량 79억 원 등 329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는 국립응급의료원 신축 260억 원, 국립암연구소 건립 72억 원 등 334억 원을 삭감하고 특허법원 신축 30억 원을 증액하여 규모상으로 304억 원을 순삭감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유가완충자금 596억 원을 삭감하고 탄가안정대책비 및 탄광근로자지원금 96억 원을 증액하여 규모상으로 500억 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립의료원특별회계에서 45억 원을 순삭감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12억 원을 순삭감하였으며,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총칙에서는 제4조의 재해복구 국고채

무부담행위 한도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발행 최고한도액 중 양곡관리 특별회계 1200억 원을 8000억 원으로, 제8조의 재정차관도입에 따른 차입금한도액 또는 국채발행잔액 중 국채관리기금 2조 5515억 원을 2조 2815억 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13조의 목적예비의 사용목적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을 추가하였고 제15조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소관에서 사업 간의 항목조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199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지금 채영석 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영철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185회 정기회 한 달 동안 단축된, 예산인데…… 저희들 50명 정말로 열심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보도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예결위원을 하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열심히 하는 예결위원회를 처음 보았습니다. 자리는 조금 뺏습니다. 왜냐하면 대선도 있고 또 상임위원회 법안심의나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로 이번 예결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대단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48억 순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아까 예결위원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연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강경식 부총리가 아직도…… 어디 집에 가서 얘기 보시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나와 계시네요. 뭐 사표를 내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가 엄청나게 폭등했습니까? 부총리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늦은 시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세수를 좀 잡아 주시고 어차피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합니다. 정권 새로…… 누가 정권 잡든.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 추정도 제대로 해야 하겠고 그런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문제점을 참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국민회의가 공조하면서 제기한 문제점을 정부에다가 전부 전달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목별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고지척이 좀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리고 내년에 세수 결함이 3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4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민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 없이 이러한 조건을 정부가 수용해 주고 제1당이 수용해 준다면 그냥 이런 조건을 부대로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1998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의결 안건이 몇 개 있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고건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85회 정기국회가 개최된 이래 두 달여 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법률안과 96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포함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영철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결산 심의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회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여러 계획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집행계획부터 면밀히 수립하고 특히 최근의 경기부진과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정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정부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찬 21세기를 열어 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예산편성에 즈음한 총리의 인사에 같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21시20분)

○의장 김수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85회국회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중첩된 관계로 해서 예년과 달리 매우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했고 또 정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정치개혁 입법과 또 내년도 살림살이가 될 1998년도 예산안과 또 조세감면규제법, 또 민생관련법안 등을 포함해서 총 151건의 안건을 대부분 여야의 원만한 협의로써 처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해서 회의가 지연되는 등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는 이를 솔직히 받아들여 겸허한 자세로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민대표로서의 양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해서 국민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 참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15대 대통령 선거일도 꼭 30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현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개혁의 실천에 우리 모두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정치선진화와 국민대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참 조)

통일외무위원장 투표결과

투 표 결 과			
박관용	129표	권익현	1표
김근태	2표	김도연	1표
김상우	1표	박정수	3표
박준규	1표	박철언	2표
양성철	1표	이동복	3표
이신범	2표	이홍구	1표
정몽준	1표	정재문	3표
기 권	5표	무 효	3표

○출석 의원 수(230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고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내무부장관	조해녕
법무부장관	김종구
국방부장관	김동진
교육부장관	이명현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
농림부장관	이효계
환경부장관	윤여준
보건복지부장관	최광
건설교통부장관	이환균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
총무처장관	심우영
과학기술처장관	권숙일
공보처장관	오인환
정무장관(제1)	홍사덕
정무장관(제2)	이연숙

○출석 정무위원

통일원차관	김석우
외무부차관	이기주
법무부차관	원정일
농림부차관	조대호
통상산업부차관	한덕수
정보통신부차관	박성득
노동부차관	우성
법제처차관	김홍대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나오연	재정경제	환경노동	신한국당	1997. 11. 18
김재천	재정경제	통상산업	신한국당	
이상현	재정경제	건설교통	신한국당	
백승홍	건설교통	재정경제	신한국당	
이신행	환경노동	재정경제	신한국당	
임인배	통상산업	재정경제	신한국당	

○의안 제출

-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7일 김호일 의원 외 25인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11월 17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7일 교육위원장 제출)
-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
(11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환경농업육성법안(대안)**
(11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
- 예금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 신용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 11월 18일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대안)**
(이상 9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6건)**
(11월 18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 휴회의 건**
(11월 18일 의장 제의)
11월 19일~12월 18일 (30일간)
- 의안 심사**
- 199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 1997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 공공차관도입계획변경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 10월 23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5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4일 정부 제출)
(11월 17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5일 정부 제출)
(11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3일 정부 제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안**
(11월 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6월 11일 정부 제출)
(11월 15일 행정위원장 보고)
- 고등교육법안**
(6월 24일 정부 제출)
(11월 15일 교육위원장 보고)
-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안**
(11월 5일 정부 제출)
- 국적법 개정법률안**
(11월 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안**
(6월 23일 정부 제출)
(11월 17일 행정위원장 보고)
-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0월 2일 정부 제출)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7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17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교육기본법안

초·중등교육법안

(이상 2건 6월 24일 정부 제출)

특수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1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6월 23일 정부 제출)

어항법 중 개정법률안

(7월 3일 정부 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5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기능대학법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30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3일 이강희 의원 외 25인 발의)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30일 황성균 의원 외 30인 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3일 이성재·이재선·신낙균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1998년도 예산안

(10월 1일 정부 제출)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2건 수정의결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7월 24일 이해찬·조찬형·조순형·박찬주·천정배 의원 외 74인 발의)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미경 의원 외 27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1996년 12월 5일 정부 제출)

(11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환경보전형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1996년 7월 16일 이길재·김종하·박범진·

박세직·신상우·안상수·이재오·최형우·

김경재·김성곤·김원길·김종배·박상규·

박정훈·박찬주·안동선·김상현·이윤수·

장영달·장재식·조성준·조순승·정일영·

조영재·지대섭·김홍신·이규정·이부영·

장을병·제정구·권정달 의원 발의)

환경농업육성법안

(7월 8일 이강두·이우재 의원 외 39인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일 유용태·김문수·방용석·정우택·

이미경 의원 외 33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30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8월 29일 이진개 의원 외 27인 발의)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5월 27일 신낙균·김상우·이성재·신기남·

추미애·김한길·천정배·김민석·한영애·

김원길 의원 외 14인 발의)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5월 27일 신낙균·김상우·이성재·신기남·

추미애·김한길·천정배·김민석·한영애·

김원길 의원 외 13인 발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0일 이경재·나오연·서정화 의원 외 18인 발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10일 김명섭·김인영·서정화·오양순·함종한 의원 외 48인 발의)

(이상 5건 11월 18일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국민건강보험법안

(1996년 11월 30일 이성재·이재선·신낙균·

김한길 의원 외 68인 발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1996년 11월 22일 임진출·권영자·오양순·김영선 의원 외 149인 발의)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2월 9일 이성재·이재선·신낙균 의원 외 23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7월 9일 이성재·장영달 의원 외 21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9월 22일 박세직 의원 외 51인 발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10월 22일 신낙균·이해찬·정희경·추미애·한영애·김한길·김병태·이성재·채영석 의원 외 68인 발의)

전역군인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10월 22일 천용택·김원길·이성재·임복진·김병태·박정훈·신낙균·정동영·채영석 의원 외 68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7일 김홍신·김허남·김병태·신낙균·이재선·이미경·추미애·홍사덕·하경근·이수인·한영애 의원 외 10인 발의)

국민의료보험법안

(10월 30일 황성균 의원 외 30인 발의)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5일 정부 제출)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6일 오양순·김명섭·황성균·함중환 의원 외 22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11월 6일 정부 제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안

(11월 6일 박세환·황성균·정의화 의원 외 25인 발의)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대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7일 김허남 의원 외 24인 발의)

(이상 18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이상 3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2일 조성준·김원길·김성곤·방용석·이해찬·한영애·조한천·천정배 의원 외 69인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청원 제출

대인지퇴금지 국제협약가입 촉구에 관한 청원

(1997년 11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한국대인지퇴대책회의 공동대표 조미리, 이장희, 문정현으로부터 이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7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7월 11일 서울시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표 김남용 외 235인으로부터 이상배·이길재·정일영 의원 외 152인의 소개로 제출)

선박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9월 25일 전남 여수시 중화동 200 평화조선소 대표 김명찬 외 80인으로부터 김동욱 의원이 7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국적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9월 23일 서울시 한강로 3가 40-4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영희 외 46인으로부터 오양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7년 10월 1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2-1 삼선빌딩 4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영길로부터 이미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고서

199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16건)

(11월 18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대전소재 중앙상호신용금고의 노사분규에 관한 질문서

(11월 15일 방용석 의원 제출)

(11월 18일 정부에 이송)